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 책			
성 명	김승태 IS		이성은 CEO
서 명	Signed	Reviewed	Approved
일 자	2022-08-01		

개정 이력

차수	제(개)정 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 내용
1	2022-08-01	2022-08-01	초도 제정
2			
3			
4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 3 장.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 법'이라 한다) 등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회사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업무와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1 자율준수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관련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 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3. 2 공정거래 관련법규 "공정거래 관련법규"는 공정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 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규를 말한다.
3. 3 경쟁당국 "경쟁당국"은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3. 4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를 도출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3. 5 자율준수관리자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제

제 4 조 선임

4. 1 자율준수관리자 선임은 이사회에서 승인 되어야 한다.
4. 2 자율준수관리자의 결원시, 그 후임자는 전항의 이사회 승인을 받기 전까지 임시로 본 규정에 따른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제 5 조 권 한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대표이사로부터 위임 받았으며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5.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5. 2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5.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5.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 6 조 의 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6.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 6.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제 7 조 직 무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세부적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 7.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 7. 2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 7.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
- 7. 4 기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 7. 5 자율준수에 대한 임직원 교육 실시
- 7. 6 자율준수행동강령의 제정 및 운영
- 7. 7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 7. 8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 7. 9 임직원 제재 조치를 위한 협의회 소집 및 운영
- 7. 10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 운영
- 7. 11 기타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8 조 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 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 9 조 회사의 지원

- 9. 1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 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9. 2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 10조 관련 부서

10. 1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를 위한 자문, 조언, 검증 등 법률자문은 관리팀에서 담당한다.

제 2 절 자율준수협의회

제 11 조 설치 및 구성

11.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추진과 관련한 자문 및 협의 기구로서 관련부서의 임원, 팀장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11. 2 자율준수협의회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 3 절 임직원

제 13 조 사전업무협의의무

13. 1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13. 2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관리팀과 협의하거나 자문을 받아야 한다.

13. 3 각 부서장 및 팀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의 2 신고의무 및 제보자 보호

13조의 2.1 임직원은 업무추진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본인이 위반한 경우에는 소속 팀(부서)장에게 보고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13조의 2.2 신고는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을 택하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13조의 2.3 임직원은 내부고발자 및 보고자 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13조의 2.4 회사는 내부고발자 및 보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

13조의 2.5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13조의 2.6 회사는 사내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사실을 발견하여 신고한 그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책임감면 등을 통하여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3 장.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제 14 조 자율준수편람

14. 1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14. 2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14. 3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자율준수 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15 조 범위반 모니터링 제도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사회 및 윤리위원회에 보고 한다.

- 15. 1 법 위반 가능성이 큰 부문에 대한 자율준수실태 점검, 조사
- 15. 2 1항의 점검,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시행
- 15. 3 관련부서에 대책 이행요구 및 이행점검

제 16 조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필요 부문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6. 1 교육내용은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공정거래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 16. 2 자율준수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7 조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17. 1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 또는 관련 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7. 2 자율준수관리자는 법위반 모니터링 등에 의하여 적발된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인사담당 부서 및 징계위원 회에 요구할 수 있다. 그 세부절차 등은 공정거래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규정에 따른다. 동 제재규정 외 추가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7 조의 2 임직원에 대한 포상

17조의 2.1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그 공로가 인정된 임직원 및 팀(부서)에 대해서 사규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7조의 2.2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여부 점검결과 자율준수 활동이 우수한 팀(부서) 및 임직원에게 대해서 관련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7조의 2.3 회사는 사내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과 관련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그 공로가 인정되면 사규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8 조 문서 관리

18. 1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 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18. 2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18. 3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제 19 조 운영성과 평가

19. 1 필요시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19. 2 전항의 운영성과 평가는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20 조 공 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상황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21 조 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 위 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제 23 조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자율준수규정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